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바로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1

2017-1호



-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조례
 -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 5건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등 5건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황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등 5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청소년의 행복성장 원동력, 청소년 활동정책 발전 방안 등 2건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서울시의회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 친일파 후손들도 참여 등 3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 조례

- ▶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5)
- ▶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8)
-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1)
-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16)
-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18)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22)
- ▶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 (24)
- ▶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26)
-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9)
- ▶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32)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황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36)
-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38)
- ▶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40)
- ▶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43)
- ▶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5)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청소년의 행복성장 원동력, 청소년 활동정책 발전 방안 (49)
- ▶ 충청남도교육청 스쿨넷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56)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 서울시의회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 친일파 후손들도 참여 (65)
- ▶ 경남도의회 화통콘서트 실시 (67)
- ▶ 제주도의회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의 내실을 위한 제도 마련 (68)

최근 제·개정 법령

-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2)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률 (74)
- ▶ 지방세징수법 (76)
-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77)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 ▶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 조례



1.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시행 2016.12.30.] [충청남도조례 제4194호, 2016.12.30., 제정]

□ 주요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위한 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조치 등을 강구하여 그들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직업지도
 - 나. 직업적응훈련
 - 다. 직업능력 개발·훈련
 - 라.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법 제2조제5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의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절차
2.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3.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방안
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지원
5.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적응훈련 실시
6. 고용서비스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7. 우수사례 발굴·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각종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도지사 및 도 출자기관·출연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그 의무고용률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파악 등)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도와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해마다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이 부진한 때에는 의무고용률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고용촉진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장
3.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5.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채용·배치, 작업 보조기구·설비 등 작업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 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작업장 설치비
2.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3.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치에 따른 필요적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요적 경비

② 보조금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할 사항을 발견·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장애인, 사업주, 시·군,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충청남도조례 제4206호, 2016.12.30., 제정]

□ 주요목적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시설, 충전시설 설치비용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4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4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4.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제4조(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아파트 중 500세대 이상의 것 및 기숙사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며,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②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기를 1기 이상, 주차단위구획 1,0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2기 이상, 주차단위구획 1,5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3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30퍼센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군에서의 적용완화)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설치대상외의 시설) 제4조에서 정한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3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충청남도조례 제4196호, 2016.12.30., 제정]

□ 주요목적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유자”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라 한다)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유단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도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조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수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전승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명예보유자”란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제3조(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를 제21조에 따른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를 “도무형문화재”로, “문화재청장”을 “도지사”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 배점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무형문화재가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동안 없는 도무형문화재
3. 도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 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문화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기술적 연구 또는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문화재의 기록

③ 제1항에 따른 도긴급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는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

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4조에 따른 도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도지사가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진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충청남도 도보(이하 “도보” 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진급보호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 · 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8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그 기능 · 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 · 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야 한다.

가.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의 세부 기준,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명예보유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의 신청이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도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 ④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③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시행 2017.3.1.] [충청남도조례 제4221호, 2016.12.30., 제정]

□ 주요목적

충청남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등의 문제발생 시 학생의 대처방법 및 보호기관에의 구호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학대예방 홍보사업)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배포하거나 학대 예방 스티커 등을 학교내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유관기관 간 협력 등)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5.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6.12.30.] [충청남도조례 제4217호, 2016.12.30., 제정]

□ 주요목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의 세부내용)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401호, 2017.1.5., 제정]

□ 주요목적

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에 따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관광활동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17.1.6.] [경기도조례 제5470호, 2017.1.6., 제정]

□ 주요목적

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수업 전후에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을 개방하는 등 학생 지원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란 정규 학교 수업시간 전·후에 스스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 등의 책무) ① 학교장 등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교실 확보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안전 대책과 시설물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의 의무) ①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선생님 등 관리자의 지도에 잘 따라야 하며 다른 학생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의 강요 등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심의)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교 학부모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9시 이전 등교 학생에 대한 특별활동 지원사항
2. 정규 수업 이후 학교 잔류 희망 학생에 대한 지원사항



3. 그 밖에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이 잘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학교 운영비와는 별도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시행 2017.1.5.] [경기도조례 제5459호, 2017.1.5., 제정]

□ 주요목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경기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일반 도민의 실질적인 평가가 반영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도민의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행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도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 및 공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1. 도내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통행목적(출·퇴근, 등·하교, 쇼핑 등)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도민평가단은 3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도민평가단은 인구 및 시내버스 노선 수 등 시·군별 여건에 따라 해당 시·군별로 도민평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④ 도민평가단원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을 돕는 사람(이하 “보조자”라 한다)을 함께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보조자는 해당 교통약자와 함께 도민평가단 1명으로 본다.

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도민평가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사람
2.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⑦ 그 밖에 도민평가단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역할) 도민평가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에 대한 제6조의 서비스평가 활동
2. 시내버스의 불편사항 제보
3.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4. 그 밖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6조(서비스평가 활동) ① 도민평가단은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활동을 실시한다.

1. 정기평가 : 반기별로 1회 실시하는 평가
2. 수시평가 : 연 4회 이내로 시·군별 도민평가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
3. 개별평가 : 연 5회 이내로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하여 도민평가단원 개인이 실시하는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해당 시·군별 도민평가단원이 합의·결정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한 일시에 미리 관련 부서가 작성한 평가서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시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 일시 및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관련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해당 시·군별 도민평가단원 중 대표자는 자가 평가서를 모아, 평가를 실시한 후 3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도민평가단원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불편점, 불편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 서비스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개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사진, 녹취 등) 및 관련인의 증언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 부서는 개별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조에 따른 도민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10분의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 활동에 사용할 목적 또는 도민평가단원이 아닌 사람도 불편 제보 및 조사를 원하는 시내버스 노선 제안을 위하여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⑥ 장애인 또는 고령자 도민평가단원은 보조자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보조자를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도민평가단의 서비스평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임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평가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도 이외 다른 시·도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이익을 받은 경우
 3. 도민평가단원이 신분 노출로 인하여 더 이상 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도민평가단원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5.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평가단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원)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평가단원 및 보조자에 대하여 교통비, 조사활동비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보호) 도지사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민평가단원의 개인정보, 평가내용 및 결과,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2.5.] [부산광역시조례 제5511호, 2017.1.4., 제정]

□ 주요목적

부산광역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최고장인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자”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는 최고장인을 육성하고 최고장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최고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최고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고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최고장인의 선정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최고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동일 분야의 최고장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② 최고장인의 선정은 해마다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마다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최고장인의 추천) 최고장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청장·군수
2. 시역 내 기업체의 장
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 증서의 서식·교부절차 및 기술장려금액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최고장인이 시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 시장은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최고장인에게 기술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최고장인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최고장인 선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3조제3항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최고장인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최고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최고장인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최고장인 증서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최고장인의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3.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최고장인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1.1.] [광주광역시조례 제4819호, 2017.1.1., 제정]

□ 주요목적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도시발전 전략으로 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미디어아트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
2.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
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
4. 각 단위 사업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과 기관별 협조 및 지원
5.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 외 교류 확대
 3.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공간 운영
 4.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5. 미디어아트 문화관광 거점 및 거리 조성
 6.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기 보고서 작성 및 모니터링
 7.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 · 교육 사업
 8.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
 9. 그 밖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사업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공간’이란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 설치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실 · 체험실 · 아카이브(Archive)실 · 문화교실과 홀로그램극장 · 홀로그램 파사드(Facade) 등의 공간을 말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광주광역시 출자 · 출연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
 2.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 교육 등 추진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광주광역시 출자 ·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업무의 범위에서 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 등에게 사용

- 료·관람료·수강료·광고료·수수료·그 밖의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시행 2017.1.1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236호, 2017.1.10., 제정]

□ 주요목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의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 구조 ·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7.1.10.]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957호, 2017.1.10., 제정]

□ 주요목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원금액)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20만원
2. 제3조제2호에 따라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제5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5조의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을 입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급사항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8조(장려금의 반환) 장려금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지급된 장려금을 지체 없이 반환청구하며,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3.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시행 2017.7.6.]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414호, 2017.1.6., 제정]

□ 주요목적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회용 병입수”란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겨서 제조·판매되는 먹는 물을 말한다.
2. “먹는 물”이란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3.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 나. 하남시의회
 - 다. 하남도시공사
 - 라.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6.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도로, 공원, 휴양림, 버스·택시 정류장, 전철역, 도서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수돗물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의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 페트(PET)병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음수대 설치와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하남시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
3.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제작·보급지원 및 홍보계획
5.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제6조(음수대의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2.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수대를 설치하려는 건물의 내외부에 설치된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에 냉각 및 가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친환경 재질의 휴대용 물병(텀블러)을 보급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와 일회용 병입수 사용 제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수질검사) ① 음수대의 위생 및 유지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한다.
- ② 시장은 설치 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상수도 및 급수관 개량사업
 2. 수돗물 직접 음용 홍보사업
 3. 일회용 페트병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대한 교육사업
 4.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수돗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하남시보 또는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거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는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159호, 2017.1.5., 제정]

□ 주요목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
2. “퇴소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3조의 정책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운영의 주체) ① 구청장은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외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그 밖의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8조(비용 지원) ·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룹홈 설치를 위한 시설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그룹홈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그룹홈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2.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
3.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3.]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834호, 2017.1.13., 제정]

□ 주요목적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출·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수는 31명으로 한다.

제5조(선출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장애·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거주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거관련 사무를 위해 청소년의회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 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2. 안전위원회 8명 이내
 3. 교육위원회 8명 이내
 4. 문화위원회 8명 이내
 5. 인권위원회 8명 이내
-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⑥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⑧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동안 연 2회 개최 하고, 연간 회의 일



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의원 선출 및 의회 운영 등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의 운영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한다.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양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제12조(의견반영) 시장은 아동·청소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청소년의 행복성장 원동력, 청소년 활동정책 발전 방안

<’16. 12. 20.(화) / 천안시 세종웨딩홀>

총 평



금번 토론회는 2016년 충남 청소년활동 실태 및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이해와 활동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의 장으로,

참석자 대부분은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청소년의 활동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청소년 활동정책 발전 방안을 위해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에 대한 재인식과 향후 청소년들에게 폭 넓은 활동 참여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음

또한, 청소년활동시설 및 다양한 사업의 기반 구축과 인지도 향상, 청소년 지도사 전문성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

주요 토론 내용

1 주제발표

<성은모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충남 청소년의 활동 참여 실태는 여성, 고등학생, 학업 성취 수준이 中 이상일수록 참여률이 높았음.
 - 지역별로 계룡·논산이 높고, 서산·보령·청양·태안이 낮은 편
- 청소년 활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여학생,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역량이 높고, 문제해결력과 행복감은 남학생·중학생·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음.
- 2016년 KYWA 전국단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은 13위, 청소년역량(개인시민성 16위, 관계형성 15위, 진로설계역량 13위), 2016 NYPI 청소년역량 전국단위도 13위로 나타남.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촉진 방안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청소년 진화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필요
 - 특정 활동에 집중되는 경향, 교류·창업·지역사회 참여활동 저조
- 청소년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전략 촉구
- 지역에 따른 청소년 활동 및 역량, 행복감의 차이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과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강구 필요
- 청소년 관련 시설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충과 기관의 전문성 강화 필요



2 지정토론

① 한도희 사무총장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충남도의 청소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 수련관은 시·군에 의무적이어야 하며, 문화의 집은 읍면동에 하나씩 있어야 하나 미흡
- 특화시설은 전무한 형편으로 충남의 청소년들은 특화시설 무엇이고, 장점과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기관이나 의회도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모름
- 유스호스텔도 13개정도 있지만 유스호스텔은 여행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능인 것이나 그러한 기능시설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학교 단체 활동 간의 시설이 아니면 여행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이라는 기본적 틀을 이야기하면서 기본 인프라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로 내용과 질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충남의 청소년들은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일 년에 두 번씩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프랑스 소도시 사례의 경우 시에서 여름 방학 때 학생들이 바캉스 안가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

- 행복한 경험을 통해 행복도가 올라오게 할 수 있도록 연중에 생활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택권 하나, 여름·겨울 방학 중 모험·개척정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자연활동 체험을 한번 주는 큰 틀의 제시로 새로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전개. 이러한 틀이 만들어지면 관련 인프라와 인력부분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 시설별로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등이 운영상 국립, 공공, 민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지 현장에 왔을 때는 청소년 모두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여겨짐.

개인, 단체의 몫이 아닌 충청도 전체에서 합심해야 하는 노력 필요

- 청소년활동에 필요성과 강화에 대한 전 국민적 홍보 및 교육 필요와 활동에 대한 국가적 공적 체계화, 현장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정책 채널 구축

② 최창욱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청소년 역량지수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점검의 장 마련
- 충청남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넓고 균형 있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위해 청소년 기관·단체·시설 및 학교의 노력 필요
- 진로활동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보급, 경험터전의 연계와 확대 등이 필요
 - 충남의 경우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약 89%, 직업 체험활동 약 66% 정도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하위 영역인 자기 이해활동과 창업활동은 각각 약 38%, 약 10% 등 낮은 수준
- 청소년활동 및 사업,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대책 필요
 - 법을 따르다 보면 제정이 어려워짐. 시군구 정도는 법조항을 지키고 읍면동은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할 수 있는 접근 필요
 -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공부만 하는 청소년 중 누가 행복감을 많이 느끼겠는가?



③ 채충민 위원(청소년특별회의 충청남도회의)

-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하며, 존중하는 밑 배경에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계기 필요
- 새로운 정책방안도 중요하지만 현재 많은 정보와 사업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대책 강구

④ 박영의 센터장(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 새로운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으로
- 수련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 청소년 수련시설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활동 공간이며,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의 출발점
-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필요
 - 1년 근무도 보장하지 않는 계약, 불안한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청소년 육성 감당의 어려움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
- 청소년 역량증진에 대한 예산 투입
 -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이라고 하지만 매년 청소년 관련 분야 예산은 줄고 있는 실정
- 청소년활동이 중앙, 지자체, 기초지자체와의 정책전달을 위해 제도적 전달체계 필요
- 일관성 있는 청소년사업 추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관련 부서 운영 안정화 필요

3 청중토론 등

< 토론자 토론 >

- 1년6개월 정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사가 배치의 미흡과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등으로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사처럼 배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임.

[질의: 보령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김선임]

⇒ 법에는 전담공무원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지역(경북)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가야할 것이며,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임.

[답변: 한국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한도희]

⇒ 사회복지직은 순환보직이 가능하나, 청소년직 1인을 두는 것이 청소년 정책체계를 올바르게 합리적 운영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면 시군별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는데 공무원 1인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현실하고는 맞지 않으나, 현장에서는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새로운 고민을 해줘야 함.

[답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 충남이 청소년활동실태 조사를 한 것처럼 충북도 얼마 전 마쳤는데 충북과 충남의 역량과 관련 지표를 보았을 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

충북은 처우개선에 대해 지도자들이 처우개선비가 확정이 되었음.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 의원님들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토양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과 격려를 부탁

[질의: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처우개선에 대해 노력은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답변: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지상]

-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예전에는 사실은 없었던 제안사항 정도였으나, 여름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일부예산을 가지고 한번쯤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결산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나?, 채충민 위원의 이야기처럼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일 것임.

올해는 청소년리더십 역량강화 과정 300명 정도 순도비로 했으며, 내년에는 600명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려고함

[답변 :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충남지역 청소년 활동 시설확충을 위한 방안 모색
2. 청소년 활동 우수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3.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 필요

<성 과>

-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 청소년에게는 균형 있는 성장발달 위해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정책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다양한 청소년 활동정책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성 인식

충청남도교육청 스쿨넷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16. 12. 19. (목) / 예산교육지원청 시청각실 >

총 평



금번 토론회는 충청남도교육청의 3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열띤 토론의 장으로

-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 의혹 및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스쿨넷 사업은 교육청 산하기관과 학교의 기존 인터넷망, 통신보안 장비를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큰 만큼 사업자 선정 문제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특히, 사업자 선정과정이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제언으로 총체적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스쿨넷 선정과정 관련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

주요 토론 내용

1 주제발표

< 강진원 TJB보도국 취재팀 부장 >

○ 충남교육청 스쿨넷의 시작과 진행,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요(현황) 설명

i) 스쿨넷 추진경과

- 2005년 10월~ 정통부, 교육부 NIS(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선정
- 2006년 1월~ 1단계 NIS 제공 개시
- 2010년 10월~ 2단계 NIS 사업자 선정, 스쿨넷 변경
- 2011년 3월 이후~ 스쿨넷 서비스 제공 中
- 2015년 7월~ 정부, 3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스쿨넷(School-net) 서비스란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제공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사업의 한 부분으로 교육관련 기관들이 지역차별 없이 저비용, 고품질의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환경을 마련한 것

ii) 스쿨넷 추진개요

- 서비스 시작 : 2016년 9월 1일부터 목표
- 운영형태 : 집선형태 - 시·군별 집선 -> 전체 집선
- 사용료 : 185억 원(5년간 매월 3억 원)

iii) 스쿨넷 추진과정

- 2015년 9월~ 충남교육청 T/F팀 구성
- 2016년 3월 31일~ 4월 6일: 사업제안요청(RFP)규격 공개
- 2016년 4월 27일: 사업제안서(RFP) 접수(통신3사)
- 2016년 4월29일 제안서 평가(평가단 80명중 7인)
- 2016년 5월 2일 스쿨넷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1위 LG U+, 2위 KT, 3위 SK B)
- 2016년 6월 13일 충남교육청과 LG U+ 협약체결
(※ 협약기간 : 2016. 9.1~2021. 8. 31)

iv) 사건의 배경(결정적 배경)

- 도교육청 담당자와 LG U+의 유착 의혹
 - 도교육청 담당자가 통신사에 잘못 보낸 문자내용으로 봐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의혹(김종문 의원 주장)
 - 업체관계자와 강원도교육청 원정 평가 시 동승 출장
 - 강원도교육청과 충남교육청 모두 LG U+ 사업자 선정됨
 - 제안서 공고 법적 기간 무시(40일- > 20일)
 - 탈락업체 “재심사” 요구 vs 도교육청 “문제없다”

v) 스쿨넷 감사와 수사결과

- 행정절차 위법
- 공무원 일탈
- 통신업체 위법
- 경찰 수사결과(8명 검찰에 송치 대전지검 10.28)



- 충남교육청은 특정업체 위한 봐주기로 REF 특혜, 청탁, 점수조작, 공정성 훼손등과 보안에 대한 인식결여, 개인일탈로 규정할 사안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충남교육청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지정토론

① 최인희 전산팀장(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네트워크 통신망 통신요금 절감을 위하여 각 학교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관리의 효율화, 보안강화,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교육정보원) 집선을 통한 단일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 사업자 선정 절차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로부터 3개 통신사가 선정되어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2016년 6월13일 LG U+와 협약 체결, 협약내용을 보면
 - 한국정보화진흥원과 3개 통신사와의 협약 특수조건으로 통신서비스 제공 기간은 60개월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로 2016.9.1.~2021. 8.31.까지로 2단계 사업자(KT, SKB)와 서비스 해지함.
- 스쿨넷 3단계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미비점 주요사항으로는
 - 사전공개와 실제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하여 보안인증서 제품 유형이 ‘통합보안관리’가 아닌 ‘통합로그관리’를 제안하여 기 운영시스템 및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연동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음
 - 제안서의 백신서버 및 보안인증서에 관한 사항이 업체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 해제 가능여부 법률적 검토
 - i) 첫 번째 백신서버 제안서 종합본에는 이전설치로, 요약본에는 신규설치로 제안

ii)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인증서 총 6종에 대하여 다른 제품의 CC인증서를 첨부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항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충청남도교육청 법률전문가 및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 사업목적(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명확할 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따라서 해제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2016년 11월15일부터 8차례 걸쳐 검수과정을 거쳐 12월9일 검수 완료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없이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으로 타 통신사 장비 사용료 정산과 9월1일부터 최종 검사승인일까지의 지연배상금을 적용할 예정이며,
 - 앞으로 스쿨넷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개선 방안 의견으로
 - 첫 번째, 교육부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 장비 기준(임대장비, 사양, 금액 등)안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 두 번째, 한국정보화진흥원 일괄 추진 또는 시도별 파견 또는 상주를 받아서(TF팀 구성) 운영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또 다른 대안으로는 조달청 입찰(평가 포함)을 통하여 계약하는 등 도 교육청에서 직접 계약하지 않는 정책변화가 필요함.

② 이상선 공동대표(충청남도시민사회단체)

- 지역 시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주로 권력감시·행정감시 차원 그리고 비리, 부패문제 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볼 것인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좋겠는가 하는 정도에서 논의하자면
 - 기자의 관점에서는 발표한 자료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반해 최인희 팀장의 발표내용은 향후 사실관계에 있어 접근을 해 봐야겠다는 입장임.
 - 왜냐면 교육청은 민원 노출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패쇄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짐

검찰, 법원 판단 등 사실관계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부정부패는 발생 즉시 초기에 제압하고 제거를 해야지 그것이 방치되고 묵인 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로 더 많은 사람의 책임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임.

③ 송호근 교수(한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 스쿨넷 서비스는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제공하는 공공정보통신 서비스사업으로 앞으로 스쿨넷 발전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언을 드리면

-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특징으로 인프라 구축 투자의 고비용으로 유지비용 저렴과 연속적 사업을 통해 이윤추구를 위한 점과

문제점 제기 영역부분으로 공정성(←부정청탁의 금지), 행정절차(←투명성 확보), 평가방법(←정량적/정성적 총체적 평가) 등이 확보되기 위한 점을 고려해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 첫 번째 비영리 운영단체가 설립하게 되면 투명성, 제도적 보완이 될 것이며, 두 번째 단일사업자가 추천이 되고 있어서 기존사업자의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복수사업자 추천제 실시로 사업자의 최소 이윤보장이 되며, 세 번째 최종수요자(학교)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별학교 협상권 및 운영주체권을 인정하고 네 번째 계약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과열경쟁 및 위기변화에 대하여 효과적일 것임.

④ 강진원 부장[TJB보도국]

○ 충남교육청의 스쿨넷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 자체감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업무담당자가 공고 기간부터 잘못 처리되었다고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업무 공간에서 근무를 한 경우
- 교육청에서는 8월에 지연배상금 요구 통지를 했지만, 그 전부터 김용필의원께서 문제제기가 나온 후에 뒤늦게 대응을 한 것은 아닌지?

- 185억 원의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꼼꼼히 챙겼어야 함에도 전문적인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미인증 제품이 들어왔는데, 사업기간 완료 전에 CC인증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업체와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기 어려움

3 청중토론

-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송호근 교수의 개선 방안으로
 - 스쿨넷 사업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길다보니 사업금액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계약기간 단축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며
 - 아쉬운 부분은 충남교육청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 같아서 끝까지 들어본 결과 명확한 논리적 근거 없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음.

- 강진원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증서를 허위를 제출했다는 것이 잘못된 맞으나 해지할 만한 막중한 문제의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지 엄밀히 해지사유를 따져보지 않고 해지행위를 했을 경우 소송에 팔려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

- ⇒ 일반적으로 기소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해지사유인 합동감사 결과 CC미인증 제품이 제안서 제출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쟁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룰 여지가 있지만, 해지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상황에서 왜 해지를 못하는가? 라고 반문한다면 의혹 및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TJB 강진원 부장]

- 최인희 팀장께 질문 드리면 RFP를 발송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제안서를 내게 되는데 그 제안서에 조건표를 첨부하고 조건표에 RFP는 인증제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인증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서류입니까 아십니까?

[스쿨넷 3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

⇒ CC인증 제품이 아닌 제품이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CC인증 제품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CC인증 제품으로 교체를 받았음.

[최인희 팀장]

- ◆ [좌장 김용필 의원] 스쿨넷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청 산하기관과 학교의 기존 인터넷망, 통신 보안장비를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아주 중대한 사업인 만큼 금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 스쿨넷 사업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개선방안 도출

- 1) 전국스쿨넷 사업의 계약기간이 5년(60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그 만큼 더 커지게 되므로 계약기간 단축방안 필요
- 2)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계약 또는 조달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 등 교육청이 직접 계약하는 사례 지양
- 3) 단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복수추천제 방식 고려

〈성 과〉

- 사업추진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
- 총체적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인식
- 전국단위의 스쿨넷 선정 관련 정책변화의 필요성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서울시의회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 친일파 후손들도 참여

□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은 2016년 2월,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림으로써 국권침탈시기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인식을 고취시켜 일본의 참된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에 대한 사례 보고 및 중간결과 보고가 있었다.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사례를 보면,

○ ‘이게 나라다’의 김세준 저자의 경우, 김민식 조부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조상의 잘못에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필사를 해왔다.

○ 미국에서 거주하는 홍순호 어르신은 한국에 있는 공준수 어르신으로부터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 소식을 듣고 친일인사의 행적을 필사해 항공우편으로 보내왔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김종욱 원내대표는 자녀들에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친일파의 행적을 꼼꼼히 필사했다.

○ 서울시의회 유 용 의원은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유 씨 성을 가진 27명의 조상들의 친일반민족 행위의 내용을 필사했다.

□ 이에 김문수 의원은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행적을 바로 알고 가슴깊이 기억하여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작한 일이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친일반민족 행위를 필사하여 항공우편으로 보내 올 정도로 많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며 “현재까지 1180명이 필사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3209명에 대한 필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화통콘서트 실시

경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직원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제1회 직원 화합·소통의 날(화통 삶는 날)을 실시하였다.

태양을 상징하는 닭과 밝음을 의미하는 정유년 새해에는 태양의 열정과 총명함, 행운과 다산의 기운이 온 누리에 퍼지듯이,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의회’ 만들기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신년 인사발령으로 도의회로 새로 전입한 26명의 신규직원들이 참석해 자기소개와 ‘나도 한마디’를 통해 희망찬 새해의 각오를 다짐하는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 음악동호회 회원들이 평소 갖고있는 색소폰과 기타 등 악기연주 솜씨를 뽐내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업무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하승철 의회사무처장은 “나부터 행복해야 남에게도 최상의 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직원들이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누는 이런 뜻 깊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의 내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춘광·부공남·고태순 의원은 제주지역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5일(목)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윤춘광 의원에 의하면 제주지역 중학교의 학업중단 비율은 전국 상위권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윤춘광 의원은 최근(2016년 12월 27일) 통계청이 자료를 토대로 제주지역 중학생 학업중단학생은 125명으로 0.5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였다.

□ 이에 대해 윤춘광 의원은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중·고등학생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학업중단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특히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학생의 경우에는 중장기 대안교육에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피력하였다. 또한 종단적인 차원에서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순한 설문조사 정도의



수준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서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제주에는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유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진학하여 검정고시를 보거나, 타시도 대안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춘광 의원은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응 학생이 발생하면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최대한 학생들을 제도권 내에서 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방향을 보면 일반학교에 적응을 하면 받아주고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밖 청소년이 되면 관할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학교부적응 학생을 방치하여 있다고 하였다.

□ 윤춘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도교육청은 매년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부적응에 대한 원인과 실태조사와 중단연구, 학생상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 등을 담고 있다.

□ 윤춘광 의원은 제도 마련을 통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윤춘광 의원은 앞으로도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내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18.] [법률 제14544호, 2017.1.17., 제정]

□ 개정이유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수문조사가 임시조직에 의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수행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제6조부터 제16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2)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함.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명칭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유역종합치수계획 중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 도시침수 방지에 특화되도록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분리함.

2)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및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노력·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계획은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함.

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빗물 활용 등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제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제29조 및 제32조)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수자원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53호, 2017.1.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등

1)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함(제3조제9호의3 신설).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제22조제8항).

3)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제34조의5제9항 후단 신설)

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66조의4제6호의2 신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제25조의2제5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함.

다.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시행 등(제26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에너지·통신·의료 등 국가기반체제와 관련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제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기반체제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제27조 등).

마.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3항 제4호 신설).

바.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 등의 자연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4항 신설).

사.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의 구축·운영(제54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통합·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합·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 등의 청구(제66조제6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채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채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채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채납 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 외국인 중 채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채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채납자의 인적사항, 채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 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채납처분의 중지예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4.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1호, 2016.12.30., 제정]

□ 개정이유

희귀질환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및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667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및 희귀질환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희귀질환관리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도록 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의 시행(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희귀질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통계사업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다. 희귀질환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제7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희귀질환 실태조사에는 희귀질환의 연령별·성별·지역별 분포, 희귀질환자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또는 희귀질환자의 진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희귀질환 실태조사는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설문 조사 및 검체 검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또는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 조사 및 검체 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라.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기준 및 방법(제8조)

1)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는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재산·소득에 대한 자료조사,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선정·통보,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또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관리 등의 사업이 포함되도록 함.

2)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희귀질환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함.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및 소득·재산 자료 등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제10조)

1)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동의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범위·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

3) 금융기관 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등의 명칭, 금융정보 등의 내용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1)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료나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연구 등을 담당하는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지정 요건을 정함.

2)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으로는 희귀질환의 진료·연구를 위한 전문의 인력, 희귀질환의 진료·연구를 위한 사무실, 희귀질환에 대한 1년 이상의 진료 실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함.

사.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업무 위탁(제1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및 자금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경기도 광명시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연령별로 배정기준을 두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전번호)의견16-0275(회신일자)2016-11-22

【질의요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연령별로 배정기준을 두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각 연령대별 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광명시의 자치사무를 위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되는 위원회이므로, 그 위원의 위촉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조례제정권자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을 연령대별로 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광명시조례 제17조제3항에서 위원 위촉에 있어 어느 한 계층이나 특정성별의 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을 확보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연령대별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주민자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내용이 조례제정권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광명시조례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각 연령대별 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명시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되는바, 연령대별 구간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각 구간별 인원수를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각 연령별 위원이 개정안과 같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명시조례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방법과 같이 어느 한 연령대가 일정비율 이상 차지하지 않도록 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리되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속초시청 - 상위법령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설기준의 조정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반영하여도 되는지?

(안전번호)의견16-0329(회신일자)2016-11-22

【질의요지】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설치기준을 규정할 때 반드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나.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그대로 재기재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은 그 규정형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조례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할 때 반드시 같은 영 별표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입법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도록 조례에 입법형성의 여지를 부여한 것이므로, 위임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향후 속초시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같은 영 별표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7조에서는 시장은 영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제1호),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제2호),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반드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지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그 규정형식이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재량을 부여한 것이므로, 반드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입법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도록 조례에 입법형성의 여지를 부여한 것이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는 하나, 위임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향후 속초시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같은 영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은 조례안 제7조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따

라 조례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지 않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그대로 재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지 않고 그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는 것은 이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단순히 확인·재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3. 15. 회신 의견 16-0054 참조).

따라서, 조례안 제7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7년 1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